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00
------------	------

발의연월일 : 2016. 10. 28.

발의자 : 김도읍 · 정태옥 · 김성원  
김현아 · 이은권 · 유기준  
성일종 · 지상욱 · 김정재  
김명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채권자의 채권비율에 따라 변제하는 제도로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와 함께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임.

그런데 현행 법률은 파산한 경우를 자격의 결격사유 또는 단체의 당연탈퇴사유 등으로 규정하여 파산자가 그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파산자의 자격이나 권리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협동조합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에서 파산한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돋고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3호 삭제).

법률 제 호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탈퇴) ① (생 략)</p> <p>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p> <p>1. • 2. (생 략)</p> <p>3. <u>파산한 경우</u></p> <p>4. ~ 6. (생 략)</p> <p>③ (생 략)</p>	<p>제24조(탈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4. ~ 6.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